





제 목:「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」금융위 의결

◇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규제로 도입하고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가능한 규제, 실효성이 낮은 규제 및 중복 규제를 일괄 정비함

I 개정 배경

- □ 금융위원회(위원장:임종룡)는 '16.11.30(水)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 하여, 「**은해업감독규정 개정안**」을 **의결**하였음
- 금번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은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모니터링 비율로 운영해 온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(이하 외화 LCR)을 규제로 도입하는 것임
- ※ 동 개정사항은 '16.6.16일「은행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(LCR) 규제도입 방안(관계부처 합동)」에서 발표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
- □ 현행 외화유동성 규제체계는 **평상시**의 **만기관리**에 중점을 두고 있어, 외화자금조달이 어려운 **위기시**에는 **대응**하는데 **한계**가 있음
- '08년 위기시 모든 은행이 외화유동성규제를 충족하였으나,
 차환율이 급락하고, 실물부문에 외화공급이 감소하는 등 외화 유동성 부족*을 경험하였음
 - * 국내은행 외화차입 차환율(%): ('08.1월)126.4 → ('08.10월)39.9 국내은행 외화대출 잔액(억\$): ('08.4Q)431 → ('09.2Q)386 → ('09.4Q)349

- □ 이에 외화자금 조달이 어려운 위기시에도 실물부문에 안정적으로 외화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은행 외화유동성 규제체계를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(이하 외화 LCR)을 중심으로 개편하고,
- 은행이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, 실효성이 낮은 규제, 외화 LCR규제와 중복되는 규제들은 정비함

Ⅱ 주요 개정내용

□ 외화 LCR 규제 도입(안 제63조의2, 안 제92조, 안 제72조)

- 외화 LCR 규제대상 은행은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**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**(외화부채-외화자산)에 대한 **고유동성자산** 비율을 **80%이상** 유지하여야 함
 - ※ 6.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'<u>매월 평균적으로'</u> 80%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은 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」에 구체적으로 반영예정
 - 다만, **산업은행**은 자체적인 외화조달여력 등을 고려하여 동 비율을 **60**%로 적용함
- 외화 LCR비율은 매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매월 금감원장 에게 보고토록 함

2 외화 LCR 규제 적용범위(안 제63조의2, 안 제68조, 안 제94조)

-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등 모든 국내은행에 외화 LCR 규제를 적용하되,
- ① 외화부채 규모가 **5억달러 미만**이면서,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**100분의 5미만**인 은행^{*}과 ② **외국은행 국내지점**^{**}, ③ **수출입은행**^{***}은 적용을 **제외**함
- * '15년말 기준으로 전북, 제주, 광주은행
- ** 본-지점 유동성 지원 확약서 징구, 본점에 대한 자국의 LCR 규제 등을 감안하여 외화 LCR적용을 제외
- *** ECA(Export Credit Agency)기관에 대해서는 해외(美·英·日등)에서도 LCR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, 정책금융기관 특성과 외화조달구조 등을 감안하여 외화 LCR적용을 제외

3 외화 LCR의 규제비율의 단계적 상향 조정(안 부칙 제2조)

- 외화 LCR 규제비율은 '15년부터 시행한 모니터링 비율을 기준 으로 '17년부터 '19년까지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함
- 산업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 이외의 외화 LCR 규제 적용대상 은행 : '17년부터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도입함
- ※ 모니터링비율: ('16) 50% → ('17) 60% → ('18) 70% → (19년) 80% 규제비율(안): ('16) 없음 → ('17) 60% → ('18) 70% → (19년) 80%
-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수협은행 : '17년에는 旣 발표된 모니터링 지도비율과 동일하게 40%로 도입하되 매년 20%씩 상향 조정함
- ※ 모니터링비율 : ('16) 30% → ('17) 40% → ('18) 50% → (19년) 60% 규제비율(안) : ('16) 없음 → ('17) 40% → ('18) 60% → (19년) 80%
- 산업은행은 매년 10%씩 상향 조정하여 '19년 최종규제비율인 **60**%를 적용함
- ※ 산업은행 규제비율(안): ('16) 없음 → ('17) 40% → ('18) 50% → (19년) 60%

4 위기시 규제비율 완화근거 마련(안 제63조의2)

 위기시 외화 LCR 규제를 준수하느라 실물부문 외화공급을 줄이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 규제비율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

5 외화 LCR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등의 근거 마련(안 제70조)

- 기존의 외화유동성 규제 위반 시의 제제 등과 동일하게 과거 1년 동안의 외화 LCR 규제 위반횟수에 따른 제재 등의 근거를 마련함
 - * (2회이하)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 (3회) 외화 LCR규제비율을 100분의 5 상향 적용 (4회) 외화 LCR규제비율을 100분의 10 상향 적용 (5회이상) 신규외화자금(만기30일 이내 콜머니 제외)차입 금지

6 기존규제의 정비(안 제64조의2 삭제, 안 제64조)

- 은행 자율적으로 관리 가능한 규제, 실효성이 낮은 규제, 외화 LCR과 중복되는 규제는 폐지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함
 - 7일 만기불일치비율, 외화 여유자금비율, 외화 안전자산보유 비율은 폐지함
 - 외화 LCR 규제 적용대상 은행은 **1개월 만기불일치 비율**, **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** 규제적용을 제외함
 - ※ ①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면서,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국내은행 ②수출입은행은 1개월 만기불일지 비율,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 등의 기존 규제를 계속 적용함

※참고: 개편 前,後의 외화유동성 규제체계

① 외화 LCR 규제 적용대상 은행

개편 前						
7일	만기불일치 비율					
1개월	만기불일치 비율 외화, 중요통화 LCR 모니터링					
 3개월	외화유동성 비율(3개월)					
	외화 여유자금 비율					
	외화 안전자산보유 비율					
1년초과	중장기 외화자금 비율					

	개편 後		
-	7일	폐지(은행 자율적 관리)	
	1개월	외화 LCR 규제 도입	
		* 중요통화 LCR 모니터링	
	1년초과	중장기 외화자금비율	

② 외화 LCR 적용 제외은행(외화부채 5억달러 미만이면서 총부채에서 외화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5%미만인 은행, 수출입은행)

	개편 前
7일	만기불일치 비율
1개월	만기불일치 비율
エノリー包	외화, 중요통화 LCR 모니터링
3개월	외화유동성 비율(3개월)
シバ理	외화 여유자금 비율
_	외화 안전자산보유 비율
1년초과	중장기 외화자금 비율

	개편 後			
*	7일	폐지(은행 자율적 관리)		
	1개월	만기불일치 비율		
		외화·중요통화 LCR 모니터링		
	3개월	외화유동성 비율(3개월)		
		폐지		
	_	폐지		
	1년초과	중장기 외화자금 비율		

기타 조문 정비 (안 제69조, 안 제62조 삭제,)

- 기존에는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시 제재 등^{*}을 **면제**만 할 수 있었으나, **감경**도 할 수 있도록 변경함
 - * 주의, 외국환포지션 한도 감축 등
- 외국환취급기관의 국내영업소 신설·폐지 및 소재지 변경에 대한 신고 의무조항을 삭제함
 - *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('14.12.9일) : 국내영업소 신설 또는 폐지, 소재지 변경 등에 대한 신고의무(제16조 제1항)와 금감원장에 대한 위임· 위탁(제37조 제4조) 폐지

Ⅲ 기대 효과

- □ 대외 충격시에도 국내은행들이 거래(유동화)가 가능한 고유동성 자산을 확보하고 있어 실물부문 외화공급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- ② '08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이 일시적으로 외화 콜시장의 수급이 악화되더라도 **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확보**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- ③ 국내 은행들이 외화 LCR 준수 과정에서 외화자산을 선진국 국공채, 우량 회사채 등으로 다변화 하는 등 다양한 외화자산 운용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- ④ 중복규제, 실효성이 없는 규제, 비공식 규제 등을 폐지함으로서 불필요한 부담은 해소하고 규제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Ⅳ 향후 일정

□ 동 개정규정은 고시하여 '17.1.1일 시행할 예정임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